

# 안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126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. 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날로 더해가는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의 근본적인 해결은 교통수단의 변화일 수 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녹색교통수단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## 주요골자

- 가.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수립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나.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, 단체 및 개인에게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4조).
- 다. 시장은 자전거타기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, 민간기업, 학교 등 각급 기관중에서 자전거타기시범기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고 시범기관에 대하여는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).
- 라.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함 (안 제8조 내지 제11조).

## 제정조례안 : 별첨

###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
-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

#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# 예산수반사항 : 연 5,250천원

○ 위원회참석수당 : 70,000원 × 15명 × 5회 = 5,250천원

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04. 06. 25 ~ 07. 15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## 안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

**제1조 (목적)**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고, 주민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책무)**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
2.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
3.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 강구
4. 기타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, 자전거 교통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3조 (기본계획의 수립)** ①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기본계획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, 시행령 제4조에 관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자전거이용활성화 목표 및 시책방향
2.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
3.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
4. 기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

③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.

④시장은 도시계획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4조 (재정지원)**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, 단체 및 개인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 (시민의 권리와 책무)** 모든 주민은 다음 각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.

1.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
2.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
3.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

**제6조 (자전거주차장의 설치)** ①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시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의 신축이나 주택단지,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**제7조 (자전거타기생활화 시범기관 지정 · 운영)** ①시장은 자전거타기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, 민간기업, 학교 등 각급 기관중에서 자전거타기시범기관을 지정 · 운영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 ·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8조 (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위원회)** ①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안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 및 이용여건 개선의 연구 활동, 시책추진에 대한 심의, 교육 및 홍보, 기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를 하며,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내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, 심의된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
**제9조 (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위원은 시의회 의원, 자전거이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, 시민단체 대표 또는 추천자,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10조 (위원의 해촉)** 시장은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
2.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이상 불참할 때
3.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

**제11조 (수당 등)**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2조 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교통행정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교통행정과장 박 영 운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교통기획담당 김 민
	담당자 성명·전화	노현우 (행정 2975)